

---

# 모두의 창업

## 일반/기술트랙 FAQ

### [도전자]

---

2026. 3

구분	순번	질 문	p
신청	1	'일반/기술'과 '로컬' 트랙 중 단일 트랙을 선택해야 하나요?	1
	2	'일반/기술'과 '로컬' 트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3	'일반/기술' 트랙의 신청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
	4	이종창업이 뭔가요?	3
	5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3
	6	신청이 불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4
	7	접수를 완료하면, 나의 아이디어가 공개되나요?	5
	8	한 줄 아이디어는 꼭 공개해야 하나요?	5
	9	사업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빼앗기지는 않나요?	6
	10	팀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6
	11	직장인이면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7
	12	사진(이미지)나 영상(숏폼)도 업로드 할 수 있나요?	7
	13	운영기관이 무엇인가요?	8
	14	어떤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하나요?	8
	15	운영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9
	16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9
	17	거주지 등과 다른 지역은 선택이 불가능 한가요?	9
	18	아이디어의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10
평가	19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10
	20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11
	21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11
	22	사진(이미지)이나 영상(숏폼)을 올리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11
	23	'라운드'별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12
	24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12
지원	25	지원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13
	26	사업 신청 시 비용 등 자기부담이 있나요?	13
	27	창업활동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14
	28	AI 솔루션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14
	29	라운드별 지원되는 멘토링의 차별점이 있나요?	15
	30	사업 도중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15
	31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16
	32	예비창업자가 라운드 중간에 사업자를 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16
	33	언제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하나요?	16

## 1 신청 · 접수

Q.1 ◆ ‘일반/기술’과 ‘로컬’ 트랙 중 단일 트랙을 선택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일반/기술’ 또는 ‘로컬’ 트랙 중 1개를 선택하여 1개의 아이디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 ‘일반/기술’과 ‘로컬’ 트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일반/기술’은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활용·융합하여 기존 시장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던 신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분야의 아이디어의 경우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로컬’은 특정 지역의 자원, 문화, 특산물, 혹은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분야의 아이디어인 경우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의 아이디어가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전국 또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면 ‘일반/기술 트랙’으로,
- 나의 아이디어가 지역의 자원 또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이라면 ‘로컬 트랙’으로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 ‘일반/기술’ 트랙의 신청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일반/기술’ 트랙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업력 3년 이내) 이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예비창업자는 공고일(2026.3.26. 포함) 기준으로 도전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 ① 공고일(26.3.26)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창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 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 공고일 (2026.3.26. 포함) 기준 업력 3년 이내 기창업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 '창업자'의 신청 자격 세부요건은 하단의 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됩니다.
-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은 출전자계 (4,000명) 별도 안내 드릴 예정이며, 제출 서류는 아래의 서류와 같습니다.

< 신청 자격 검증 제출 서류 안내 >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이력 X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사업자 등록 이력 O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기업	개인사업자	창업기업 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창업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창업자의 경우]

▶ **신청가능 업력** : 2023.03.27. ~ 2026.03.26.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 및 평가 예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 **이종창업**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참고3] 창업여부 기준표 내의 '동종의 범위' 참고)**

Q.4 ◆ 이종창업이 뭔가요?

◆ 이종창업은 '기존에 하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치킨집(요식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IT회사를 새롭게 기획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이종창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 코드 5자리의 변경 여부로 이종창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불가합니다.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Q.6 ◆ 신청이 불가한 기준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신청제외대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신청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 2026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Q.7 ◆ 접수를 완료하면, 나의 아이디어가 공개되나요?

◆ 도전자가 작성한 한 줄 아이디어만 공개 희망 선택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 줄 아이디어 외, 도전자가 작성한 아이디어 세부 내용은 모두 비공개입니다.
- 선정 이후에는 도전자의 동의 아래, 아이템의 핵심·원천기술을 제외한 아이디어 발전 과정을 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Q.8 ◆ 한 줄 아이디어는 꼭 공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 시 공개-비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한 줄 아이디어는 도전자의 아이디어를 한줄로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도전자는 이를 통해 내 아이디어에 대한 대외적 호감도를 '좋아요♥'를 통해 플랫폼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Q.9 ◆ 사업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빼앗기지는 않나요?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 출원이 가능하십니다.

-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사오니,
-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Q.10 ◆ 팀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팀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개인'의 아이디어를 평가하기 때문에 신청 시 팀으로서 신청이 아닌 개인으로서 신청을 받고 있고,

- 신청서 제출 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에 함께 도전할 팀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팀원의 유·무 또는 역량 등은 부가 정보로 선정을 위한 평가 요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11 ◆ 직장인이면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향후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멘토링 등의 창업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화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소속 직장의 겸직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 사진(이미지)나 영상(숏폼)도 업로드 할 수 있나요?

◆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숏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제출 양식은 필수로 작성하여 주시고, 제출하는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미지) 및 영상(숏폼)을 추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jpg, Png, gif 파일로 최대 5장 제출할 수 있고, 영상(숏폼)은 URL을 최대 1건을 작성·연동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주신 이미지 및 영상(숏폼)은 아이디어 평가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Q.13 ◆ 운영기관이 무엇인가요?

◆ ‘운영기관’은 도전자에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창업지원 기관입니다.

- 신청시 1개 기관만 선택가능하며, 운영기관은 아이디어 평가·선정 및 아이디어의 창업 사업화를 위한 지원 기능을 수행 합니다.

◆ 운영기관마다 특화된 지원분야, 중점 선발 방향 등이 상이하오니 운영기관 선택 전 운영기관 정보를 충분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Q.14 ◆ 어떤 운영기관을 선택해야 하나요?

◆ 도전자의 주된 활동 지역과 운영기관별 주력 지원 분야, 보유멘토 등을 종합·고려하여 최종 1개 운영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운영기관 프로필을 살펴보고 안내되어 있는 기관 소개, 주요 성과, 보육계획 및 선발기준 등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시어 선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AI 챗봇이 도전자가 선택한 지역과 아이디어 분야 등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기관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다만, 추천결과는 AI 챗봇의 학습 결과에 따른 결과로, 운영기관 선택 시 참고 정보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5 ◆ 운영기관을 바꿀 수 있나요?

◆ 접수 기간 중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 기간 중에는 작성중인 아이디어 내용을 포함하여 선택한 운영기관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운영기관의 변경·교체가 불가능 합니다.

Q.16 ◆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 도전자는 선택한 지역 내 운영기관을 통해 평가 및 선정, 이후 직접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게 됩니다.

- 특히 책임멘토와 1:1 대면 멘토링이 4회 내외로 제공될 예정 이므로 지역 선택 시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Q.17 ◆ 거주지 등과 다른 지역으로 선택이 불가능 한가요?

◆ 지역이 다른 곳을 선택하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운영기관에서 필수로 제공받는 1:1 멘토링 등의 대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 \* 직장인 및 군장병 등 대면으로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는, 운영기관과 합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 가능

Q.18 ◆ 아이디어의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될까요?

◆ 작성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비즈니스(사업) 분야인지를 고려하여 한 가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 선택한 비즈니스(사업) 분야는 각 운영기관의 지원 전문 분야와 교차·비교하여 AI 챗봇이 운영기관을 추천하여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2 선정 · 평가

Q.19 ◆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도전자께서 선택하신 운영기관을 통해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 각 운영기관은 해당 기관에 신청한 도전자들의 아이디어를 상대 평가하고, 평가 순위에 따라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출전자 (4,000명)	ROUND 1 (지역예선/500명)	ROUND 2 (지역오디션/200명)	ROUND 3 (권역오디션/100명)	ROUND 4 (전국오디션/10명)
서면평가 (운영기관의 책임멘토)	관찰식 평가(책임멘토) + 서면평가(운영기관)	공개 IR (기술전문가 및 지역투자사)	비공개 IR (투자사)	대국민평가단+ 온라인투표+ 전문가평가

Q.20 ◆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 트랙의 경우 각 라운드별로 평가 기준과 방법이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전자 (4,000명)	ROUND 1 (지역예선/500명)	ROUND 2 (지역오디션/200명)	ROUND 3 (권역오디션/100명)	ROUND 4 (전국오디션/10명)
아이디어 가능성, 구체성, 기대효과 등	멘토링 참여, 사업계획 성장성, 아이템 우수성 등	MVP 결과, 시장진출 가능성, 향후 계획 등	그간의 성과, 시제품 결과, 사업화 계획 등	성장 가능성, 국민 선호도, 아이디어 혁신성 등

- 향후, 라운드별 진행 과정에 따라 평가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21 ◆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현재는 6월 1주를 예정하고 있으나, 도전자 접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 안내 일정은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하신 운영기관을 통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Q.22 ◆ 사진(이미지)이나 영상(숏폼)을 올리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있나요?

◆ 아니요, 사진(이미지) 또는 영상(숏폼)을 올리지 않았다 하여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첨부하신 사진(이미지) 또는 영상(숏폼)은 아이디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로만 활용 예정이며,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23 ◆ '라운드'별로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1라운드까지는 제출해주신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아이디어의 참신성, 도전자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고 2라운드 부터는 IR 형식의 지역별·권역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 100명 대상으로 진행되는 최종 라운드는 대국민 현장평가, 온라인 평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 향후, 라운드별 진행 과정에 따라 평가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상세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Q.24 ◆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상용화되어 있거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아이템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선정 이후 기존 아이템과 동일함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지원 내용

Q.25 ◆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반/기술' 트랙의 경우 각 라운드별로 단계에 맞게 수준별·맞춤형 지원 예정입니다.

출전자 (4,000명)	ROUND 1 (지역예선/500명)	ROUND 2 (지역오디션/200명)	ROUND 3 (권역오디션/100명)	ROUND 4 (전국오디션/10명)
창업활동비 (2백만원) 1:1 멘토링 AI 솔루션	시제품 제작비용 (최대1천만원) 1:1 멘토링 기술멘토링	시제품 제작비용 (최대1천만원) 선배 창업자 멘토링 1:1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1억원)	상금 5억원+ 투자 5억원 내외

- 향후, 라운드별 진행 과정에 따라 평가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26 ◆ 사업 신청 시 비용 등 자기부담이 있나요?

◆ 아이디어 선발단계에서는 도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 다만, 3라운드 100인에 포함되어 차년도 사업화 자금 지원시에는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지원 대상자분에게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27 ◆ 창업활동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창업활동자금은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로 구현하고 검증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창업 준비 활동에 소요되는 출장 비용(기차 등 대중교통비), 창업 준비에 필요한 재료비 등 창업 활동과 연관이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온라인전자상거래(PG업종), 클린카드 적용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환금성 업종 등 프로젝트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합니다.

○ 창업자금 활용 후 간략한 창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보고서를 통해 창업활동자금을 얼마나 알차고 계획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1라운드 평가요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Q.28 ◆ AI 솔루션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 ‘일반/기술’ 트랙에서 선발된 4,000명 대상으로 AI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경영관리 등 필요한 목적에 맞는 AI솔루션(SaaS)을 선택하여 월 평균 50만원 내외(월 최대 100만원)로,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범용 AI 솔루션을 제공할 양질의 기업을 구성 중에 있으며 AI 솔루션 활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원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29 ◆ 라운드별 지원되는 멘토링의 차별점이 있나요?

◆ 모두의 창업프로젝트(일반/기술 트랙)에는 총 3종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책임 멘토링) 시작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책임멘토가 매칭되어 1:1로 도전자의 아이디어를 전달하여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창업 준비까지 성장 과정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 (기술멘토) 1라운드(500명)부터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기술 전문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 (선배 멘토) 2라운드 선정자(200명)을 대상으로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타 법률 및 세무, 특허 등 전문분야 멘토단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30 ◆ 사업 도중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불가합니다.

- 신청 시에 제출한 아이디어와 온전히 다른 창업 아이디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신청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으므로, 선정 후 해당 아이디어를 다른 아이디어로 변경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및 지원 형평성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Q.31 ◆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 도전자의 도전과 실패를 모두 지원하는 프로젝트 취지를 고려, 중도 포기 시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 다만, 중도에 포기 시 포기 사유와 함께 포기 의사를 사전에 운영기관에 전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32 ◆ 예비창업자가 라운드 중간에 사업자를 낼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라운드 참여 중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자 신규 사업자 또는 기창업자의 이중창업 사업자는 라운드 중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운영기관에 사전계획 및 사후결과를 반드시 전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33 ◆ 언제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하나요?

- ◆ 3라운드(100명)에 선발되어 차년도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시에는 사업자등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을 하여야 하나, 도전자 유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시점은 상이합니다.
-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자등록 필요
- (창업자(이중창업 희망자)) 협약체결 전까지 이중으로 사업자등록 필요
- ※ (참고) 창업여부 기준표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고3

###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폐업 3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 업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 상속/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